

# 2025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행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와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5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0.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1 공모개요

- 사업명 : 2025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구.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총사업비 : 1,6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최소 3백만 원 ~ 최대 8백만 원 \*지원 장르 및 분야별 상이
- 지원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문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지원내용 : 전문 예술인(단체)의 기초예술창작 발표활동(공연, 전시, 출판)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025. 1. 10.(금) ~ 2. 7.(금) / 29일간
- 접수기간 : 2025. 1. 21.(화) ~ 2. 7.(금) 17:59 / 18일간

## 2

## 전년도와 달라진 점

구분	2024년	2025년
사업 접근성제고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술인 권익 증진	(개인 선정자) 선정금액의 15% 이내 개인 창작 활동비 편성 가능	(개인 선정자) 선정금액의 20% 이내 개인 창작 활동비 편성 가능
수혜기회 확대 목적 휴식년제 강화	(개인 선정자) 1년 선정, 1년 휴식	(개인 선정자) 1년 선정, 2년 휴식
장애예술단체 가산점 기준 강화	사업 참여자 중 장애예술인 1명 이상 참여 확정 시 가산점 5점 부여 ※ 단, 장애인증명서로 증빙 필수	사업 참여자 중 장애예술인 30% 이상 참여 확정 시 가산점 5점 부여 ※ 단, 장애인증명서로 증빙 필수
지역 인구감소 대응	군 단위(8개) 소재 개인 및 단체에 가산점 2.5점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상지역(10개) 소재 개인 및 단체에 가산점 2.5점 부여 ※ 인구감소 대상지역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미정산 제재 강화	재단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선정자(단체)로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산 완료 전까지 보조금 교부 불가	재단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선정자(단체)로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되더라도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내에 정산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함

### 3 세부 공모 내용

○ 공모구성 ※ 신청자별 하나의 분야-장르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장르	지원자격 및 선정 시 필수 수행내용	지원규모
[개인 / 단체] 예술창작	문학	(자격) ※ 개인 신청의 경우 블라인드 심의 진행 -개인: 최근 3년 이내(22~24) 1회 이상 개인作品集 발간 경력 증빙 -단체: 최근 5년 이내(20~24) 3회 이상 단체作品集 발간 경력 증빙 (수행내용) -개인: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창작집 발간 -단체: 협회지, 동인지, 문예지 발간	(개인) 3백만원 정액 (단체) 3~5백만원 차등
	시각	(자격) -개인: 최근 3년 이내(22~24) 1회 이상 개인전 경력 증빙 -단체: 최근 5년 이내(20~24) 3회 이상 단체전 경력 증빙 (수행내용) 미술, 공예, 서예, 사진 등 시각예술분야 전시 진행	(개인) 4백만원 정액 (단체) 4~6백만원 차등
	공연	(자격) -개인: 최근 3년 이내(22~24) 1회 이상 개인 공연(발표회) 경력 증빙 -단체: 최근 5년 이내(20~24) 3회 이상 단체 공연(발표회) 경력 증빙 (수행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 진행	(개인) 5백만원 정액 (단체) 5~7백만원 차등
	다원	(자격) ※ 단순한 장르 결합 방식의 복합예술은 신청 및 지원 불가 -개인: 최근 3년 이내(22~24) 1회 이상 개인명으로 진행한 다원예술 관련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 경력 증빙 -단체: 최근 5년 이내(20~24) 3회 이상 단체명으로 진행한 다원예술 관련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 경력 증빙 (수행내용) 장르 융복합 예술활동 발표, 비예술분야와 결합한 예술 활동 발표, 새로운 형식의 예술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예술활동 발표 진행	(개인) 5백만원 정액 (단체) 5~7백만원 차등
[단체] 예술확산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자격) 최근 5년 이내(20~24) 내에 3회 이상 신청 단체명으로 예술계의 발전 및 예술인 발굴을 위해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학술대회, 연구 프로그램 등 수행 경력 증빙 (수행내용) 신청 단체명으로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학술대회, 아카데미 등 활동 추진	7~8백만원 차등
[개인] 젊은예술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총사업비) 168백만원(총사업비의 10% 의무배정) (선정규모) 42건 (자격) 공고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예술인 (1985. 1. 1.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주민등록등본 기준) (수행내용) 신청 예술인 주관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출판, 전시, 공연 형태로 발표	4백만원 정액

○ 장르별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장르	세부장르	지원분야	지원내용
문학예술		◦예술창작(개인), 젊은예술	-개인 창작집 발간
		◦예술창작(단체)	-단체 창작집 발간
		◦예술확산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등
시각예술	◦미술 ◦사진 ◦서예 ◦공예	◦예술창작(개인), 젊은예술	-개인전
		◦예술창작(단체)	-단체전
		◦예술확산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등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예술창작(개인), 젊은예술	-개인 공연
		◦예술창작(단체)	-단체 공연
		◦예술확산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등
다원예술		◦예술창작(개인), 젊은예술	-개인 전시, 출판, 공연 등
		◦예술창작(단체)	-단체 전시, 출판, 공연 등
		◦예술확산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 시 장르 선택은 예술인(단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창작활동의 결과물이 발간, 전시, 공연의 형태로 발표되어져야하며 단순 연구, 개인 기록물 제작 등의 형태는 지원신청 불가함

○ 분야별 자격사항 증빙자료

분야	장르	증빙자료
예술창작 개인/단체	문학예술	◦신청자(개인/단체)명의 발간물을 촬영한 사진파일 - 발간물의 제목, 발간일자, 발간자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각예술	◦신청자(개인/단체)명으로 진행한 전시관련 사진파일 - 전시명, 전시일자, 전시 주최자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 도록을 촬영한 사진파일 등)
	공연예술	◦신청자(개인/단체)명으로 진행한 공연관련 사진파일 - 공연명, 공연일자, 공연 주최자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 팸플릿을 촬영한 사진파일 등)
	다원예술	◦신청자(개인/단체)명으로 진행한 발표(공연, 전시 등)관련 사진파일 - 발표명, 발표일자, 발표 주최자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 팸플릿, 도록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 등)
예술확산	전 장르	◦신청 단체명으로 진행한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세미나, 학술대회, 연구 프로그램 등 관련 사진파일 -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 주최자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 등)
젊은예술	전 장르	◦주민등록등본(소재지 및 나이 확인 용도)

※ 분야별 세부 자격사항 확인 후 조건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 4

## 지원기준

### 1) 지원신청 자격

- 개인 주소지 및 단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제한
  - 개인: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발급일자가 최근 1년 이내) 필수 제출
  - 단체: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필수 제출

### 2)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개인 및 단체

####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자(휴식년제 적용)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자

#### [단체]

- 국·공립(도·시·군·구)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문화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문화시설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 동호회, 동아리로서 구성 및 운영되는 단체
- 주된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단체

#### [공통]

#### (자격사항)

- 공고일 기준 등록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개인 및 단체(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통해 확인)
- 국립·공립·사립학교(초·중·고·대) 및 사학 재단 소속 개인 및 단체

#### (지원총량제)

- 지원총량제: 수행 기간 기준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동일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재단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총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제한

#### (사업포기)

- 2022년 ~ 2024년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개인 및 단체
  -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사업포기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불공정 행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 및 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 및 「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임금(사례비)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

###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개인 및 단체는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사업 기간 중에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침해 등의 사유로 법적 분쟁 중이거나 형을 선고 받은 개인 및 단체

### (미정산)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단, 정산 처리 기한 중에 있는 2024년 지원사업 선정자는 예외로 함)

### 3)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 개인 신청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단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단체 신청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개인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현직 교사·교수의 학술지 발표, 연구 활동 등으로 지원받는 사업
- 학위청구 또는 기관(조직) 내 연구 활동 실적 제출을 위한 사업
- 타 기관 및 조직의 주최(기획)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 지원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직접 운영 원칙 위배)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초·중·고·예비 예술인(대학생 포함) 50% 이상이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
- 타인의 명이나 작품을 도용하여 신청한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등

### 4)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 다수 사업 선정 불가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을 구성하는 8개 사업에 대해 1개 사업 이상 신청은 가능하나 다수 사업 선정 시 1개의 사업만 선택하여 진행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 소공연장지원사업,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사업, 아트전북페스타,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 5) 행정심의 결격사유

- 개인/단체 지원신청 자격 미해당
- 개인/단체 지원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 개인/단체의 착오로 인한 장르 및 분야 오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 지원신청 불가능한 사업계획
- 필수제출 서류(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체 등록증 등)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 6)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 지원신청 시 예술인(단체)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 진행
- 부정확한 정보의 기재, 제출된 자료의 오류, 신청자의 신청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7) 유의사항

-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혜택 없음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재단 회계 정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선정 이후 모든 활동은 관계 법령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진행됨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내용 확인 및 동의 필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선정 이후 주요 사업내용(지출계획 포함)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기간 이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제한)
- 선정자 워크숍, 정산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서 안내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행 시 제3자로부터 예술 활동을 노무로서 제공받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 작성 필수)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보조금 편성 가능
-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2025년도 교부신청 기한 내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



## 5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1)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5. 1. 10.(금) ~ 2. 7.(금) / 29일 간
- 신청기간 : 2025. 1. 21.(화) ~ 2. 7.(금) 17:59 / 18일 간
  - ※ 마감 당일에는 신청 접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접수 및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마감일 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재단 직원의 시스템 지원신청 대행 불가)
- 신청순서

#### ① 분야/장르별 지원신청서 작성

- 2025. 1. 14.(화) 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 ‘2025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행공고’ 내에 첨부되는 지원신청서(한글 파일)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장르별 신청서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제출서류 구비(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후 지원신청서(한글 파일)에 첨부

#### ② 작성 완료한 지원신청서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매뉴얼 참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관련 문의처 :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시 필수 조건

구분	조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li> <li>◦ 주민등록등본상 본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활동명(필명)으로 가입할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될 수 있음</li> </ul>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li> <li>◦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만 지원신청 가능</li> <li>◦ 단체등록증상 단체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약칭으로 가입할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될 수 있음</li> <li>※ 휴, 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단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소 등 확인 및 수정 필수</li> <li>◦ 개인 수행 사업은 개인 계정으로, 단체 수행 사업은 단체 계정으로 신청해야 함</li> <li>※ (주의사항) 대표자 계정으로 단체 사업 신청 시 행정심의 결격</li> </ul>

### 3)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마감일에는 많은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2~3일 전에 신청 권고
- 신청서 최종 제출 후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는 신청서 회수 및 재작성 가능. 단, 마감 시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 내용 수정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는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장르별 담당자 내선번호로 가능하며 응대 가능 시간은 월~금(10:00~11:30, 14:00~17:00)에 한함

기관구분	문의내용	연락처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	문학·다원	063-230-7449
	시각 (미술, 사진, 서예, 공예)	063-230-7444
	공연 (음악, 연극, 전통, 무용)	063-230-7446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온라인 시스템 사용 관련	1577-8751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폭언사례(=근로자 피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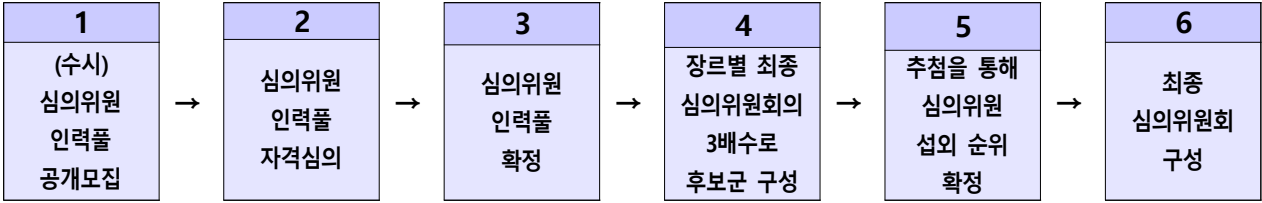
- 신청 접수 마감 당일 ‘왜 사업 공고를 본인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냐’며 폭언 행사 → 공모사업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간 공고하고 있음
- 신청 접수 마감 당일 ‘지원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많다.’, ‘지원신청서를 대신 써 달라’며 폭언 행사 → 지원신청서는 접수 마감 전에 미리 작성하여야 하며 재단 직원의 대리 작성, 대리 제출은 불가함
- 신청 접수 마감 당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폭언 행사 → 접수 마지막 날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자가 폭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제출 권고할 것을 공고문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2024. 1. 14.(화) ‘2025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행공고’ 글에 첨부 예정
- 신청하고자 하는 장르/분야에 맞는 지원신청서(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에서 지원신청 진행 시 첨부 후 제출

## 6 지원심의 안내

### 1) 심의위원 구성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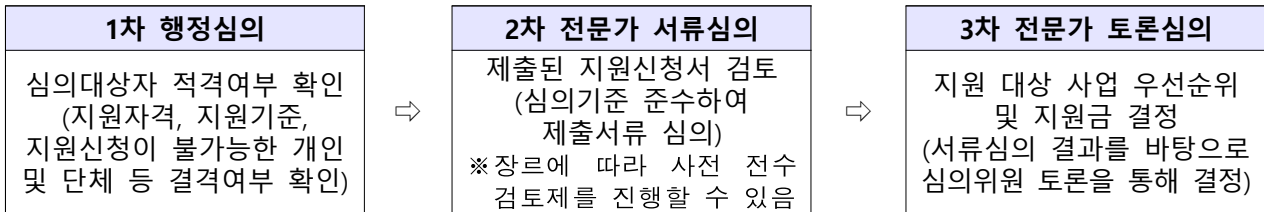


#### ※ 심의위원 자격

#####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운영내규 제6조(심의위원 인력풀의 구성) 제1항

- 1호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호 문화일반·복지, 지역 문화, 국제 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호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 2) 심의절차 ※ 장르/분야별 세부 심의 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전수검토제 : 신청자의 지원서류를 심의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 3) 행정심의 내용

구분	검토내용	반영사항
결격사유 확인	1)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심의 배제 (결격처리)
	2) 필수제출 서류(재단이 지정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체등록증, 각종 서약서 등) 미제출	
	3) 지원신청서를 통한 분야별 자격요건 증빙 불가(또는 증빙된 자격의 미달)	
	4)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지정양식 미사용 등)	
	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신청 분류(장르/분야) 오 선택 예) 음악장르 지원신청서(한글파일)를 작성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때 미술장르를 선택 후 제출한 경우 등	
가산점 적용사항 확인	지역 가산점(2.5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지역(10개)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최대 합계 5점까지만 인정
	신규(최초 지원) 가산점(2.5점) ※2020~2024년 동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개인/단체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5점) ※장애인 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가산점을 득함	

#### 4)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 항목	가산점 부여 대상	참고사항
인구감소 위기지역 (2.5점)	-대상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지역(10개) -세부지역: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최대 합계 5점까지만 인정
신규(최초) 지원 (2.5점)	-2020~2024년 기간 내 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개인/단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5점)	-개인 신청자: 장애인증명서 첨부한 자 -단체 신청자: 사업 참여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자의 장애인증명서를 전부 첨부하여 증빙한 단체	

#### 5) 분야-장르별 심의기준

##### ① 예술창작(개인) - 문학 ※ 블라인드 심의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50%)	- 제출한 원고가 우수한가? - 창작집에 수록될 작품의 예술성은 높은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 지원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창작집 발간 계획이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대성과 기여도 (20%)	- 사업을 통해 신청인의 활동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는가? - 지역 문학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블라인드 심의: 심의위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지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품과 사업계획(지출예산 등)만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함

##### ② 예술창작(단체) - 문학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40%)	- 지원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문예지 발간 계획이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신청단체의 실행역량 (40%)	-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학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③ 예술창작(개인/단체) - 시각·공연·다원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술적 우수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신청자(단체)의 실행역량 (20%)	-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도민 문화 향유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 ④ 예술확산 - 문학·시각·공연·다원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술적 우수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신청단체의 실행역량 (20%)	-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도민 문화 향유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 ⑤ 젊은예술 - 문학·시각·공연·다원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성장가능성(30%)	- 신청자가 해당분야의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7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 7 예산 편성 안내

### 1)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 경비

세목	항목	용도	비고
일반수용비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텝, 단기스텝, 단기 보조아르바이트, 작업보조자 등</li> <li>· 출연료, 평론, 자문 등</li> <li>· 개인 신청자의 창작활동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가능</li> <li>· 단체 신청자의 대표자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함</li> <li>- 단체 대표자가 국립·공립·시립 등 공공기관, 학교시설, 등에 소속된 자로서 정년이 보장된 고용형태로 근로중인 경우 대표자 사례비 지급 불가</li> </ul> </li> </ul>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원천세 및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해당 시)
	발간비	· 도록, 서적 등 발간	
	홍보 및 마케팅	·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수선비	· 무대, 세트 의상, 소품 등의 수선비	사업자 등록업체와 거래필수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 세트, 소품, 전시장 조성 등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li> <li>·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영상, 음악, 액자, 악보 등)</li> </ul>	카드 거래 원칙
임차료	대관료	·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료	개인 간 거래 불가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상 및 소품(대소도구, 악기) 대여비 등</li> <li>·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li> </ul>	
국내여비	교통 및 체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운송비</li> <li>※ 개인/단체 교통 이용 요금 지출 불가</li> </ul>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자율편성

## 2)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 환수대상

사용불가 항목	세부내용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사용 시 환수조치)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자산취득비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공연의상,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①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② 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
행사 답사비 등 비용	·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보조금 수령자(단체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거래불가
부가가치세	·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결제 불가

## 8 향후 추진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사업공고	◦ '25. 1. 10.(금) ~ 2. 7.(금) / 29일간
지원신청서 첨부	◦ '25. 1. 14.(화) 예정
신청접수	◦ '25. 1. 21.(화) ~ 2. 7.(금) 17:59 / 18일간
사업설명회	◦ '25. 1. 22.(수) 익산시 ◦ '25. 1. 23.(목) 군산시 ◦ '25. 1. 24.(금) 전주시 ※ 예정사항이며, 일시별 장소가 확정되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지원심의	◦ '25. 2. 10.(월) ~ 3월
결과발표	◦ '25. 3. 18.(화) * 예정사항이며,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장소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